일반논문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최일성
한서대학교

〈논문요약〉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탈권위주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1987년 2월에는 21개의 진보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여성운동의 실질적인 결집체가 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게 되는 바, 그로부터 여성운동의 흐름은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소위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차원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전환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여성계는 주부, 청년여성 등 좀 더 광범위한 계층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운동공간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정치에의 여성참여 증가현상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민주적 주체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 주요어: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배제, 탈정치적 행위자, 비정치적 행위자, 여성정치세력화운동

1. 서론: 참여민주주의 일환으로서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탈권위주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1987년 2월에는 21개의 진보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여성운동의 실질적인 결집체가 될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결성되는 바, 그로부터 여성운동의 흐름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전경옥·유숙란·신희선·김은실은 여성운동의 중심이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소위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차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전경옥 외 2010, 67).

이러한 전환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기선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6월 항쟁으로)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진보적 여성들은 **소수 전위적 여성운동가만이 아닌** 여성대중과 함께 하는 합법적 운동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1980년대 초반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한 여성운동의 방향은 옳았지만, 여성대중의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 과격성으로 인해 다수의 대중과 유리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진보적 여성운동은 주부, 청년여성 등 **좀 더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들을 포괄하기 위한 운동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김기선미 2004, 353; **강조**는 필자)." 궁극적으로 여연의 출범은 일부 전위적 여성운동가들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여성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운동공간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여연의 활동이 한국사회의 대중적 여성운동의 확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결성(1987년 3월)을 시작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충남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부산여성노동자의집, 함께하는주부모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별, 부문별 여성단

체들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여연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김기선미 2004, 352).

이러한 상황에서 여연은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을 "정치부문에서 여성의 균형적인 참여(전경옥 외 2010, 67)"로 정의하고, 실천적 대안으로 '여성할당제'—중앙정치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차원에서도—를 제시한다. "민주화과정에서 이념, 법제, 정책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실질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 정치적 제도 차원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는 의회 내에서의 남녀의원이 균형적으로 대표되는 것이다(전경옥 외 2010, 70)."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당법이 개정되고 여성할당이 부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5.9%(2000년 제16대 총선, 16명)에서 13%(2004년 제17대 총선, 39명)으로 수직상승하게 된다.[1]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정치에의 여성참여 증가현상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민주적 주체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1987년 여연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2] 이러한 검토는 필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논리, 근거, 진행방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그러한 운동의 정치사상적 토대가 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론'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

1) 2000년의 정당법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였고, 2004년의 정당법은 지역구 30% 할당 권고규정과 비례대표 50% 의무규정을 명시하였다(전경옥 외 2010, 76-85).

2) 1987년 여연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특히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다양한 단체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지하게 된다(조현옥 외 2005 참조). 이 글은 일차적으로 1987년 여연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참여민주주의론의 이론적 균열: '탈정치화' 된 대중?

'참여'의 관점에서 정치적 행위자들의 '민주적 주체성' 문제를 살핀다는 것은 흔히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석수준을 서로 상관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행위자들이 참여의 개념을 중심으로 행동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분석이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혹은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혹은 절차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체제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그것이다.

1960-1970년대 서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론'은 이러한 두 가지 분석수준이 어떤 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이론체계였다. 초기 이론가들 가운데 한 명인 페이트먼(C. Pateman)은 자신의 저서 『참여와 민주주의(1970)』에서 루소(J. J. Rousseau)나 밀(J. S. Mill) 등과 같은 이른바 '고전적 민주주의이론가들'을 비판하고 나선 당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이론들이 정작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개인적 수준—의 문제를 외면한 채, 주로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대의정부이론'—체제적 수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페이트먼 1986, 35).[3)]

그녀에 의하면, 당시 출현한 새로운 민주주의이론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한 대중들의 직접적 정치참여에 내재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페이트먼 1986, 6). 대중은 '탈정치화된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치사회학은 대규모의 경험연구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시민,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

3) 페이트먼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당대의 민주주의이론가들은 슘페터(R. Schumpeter), 베렐슨(B.R. Berelson), 달(R.A. Dahl), 사르토리(G. Sartori), 엑스타인(H. Eckstein) 등이다. 이들에 대한 페이트먼의 비판에 대해서는 페이트(1986, 6-37 참고).

속하는 시민들(페이트먼 1986, 8)"이 일반적으로 정치나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후 독립한 신생국들의 독재정권은 따라서 이들을 선동하고 조작하여 자신들의 전제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당대의 민주주의이론가들이 무엇을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로 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했던 '누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판 응답이었고, 그 해답은 이미 그가 『정치학』에 피력해 놓은 유명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자유민 또는 시민대중[…]이 최고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들의 불의한 기준은 필연적으로 불의를 저지르게 하고, 이들의 어리석음은 실수를 저지르게 할 테니 말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09, 163)." 정치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곧 '포퓰리즘(Populism)'[4]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국민통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이며(페이트먼 1986, 7; 달 1999, 507), 대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단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 결정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제한되며(페이트먼 1986, 25)," 따라서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그들 간의 경쟁(페이트먼 1986, 34)"은 활성화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체제'의 효율적인 작동방식에 맞춰졌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론이 정치학계에 미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

---

4)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대중적 언습과는 별도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주정립(2006, 46)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적 맥락들 속에서 주로 '기술'하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연구경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오네스쿠와 겔너(Ghiţa Ionescu & Ernest Gellner 1969)를 참고할 것.

도 지나치지 않다. 신생 민주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군부독재를 경험한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까지도, 한국 민주주의의 저발전 요인으로 주로 대의민주주의체제의 저발전, 특히 '민주적 정당체제'의 저발전이 지적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들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이론은 페이트먼과 같은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보기에는 개인적 변수, 즉 구성원들의 정치적 참여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이론체계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참여민주주의론자들의 비판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를 겨냥한 것—그것은 사실 불가능할지 모른다—이 아니라, 그러한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이론가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소위 '엘리트주의'적 편향을 공격한다는 사실이다.[6] 페이트먼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의민주주의이론은 '개인적 수준'에서 대중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그 작동방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7] 더 나아가 그러한 참여능력을 진작시키지 못했을

---

5)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장집·박찬표·박상훈(2007)과 최장집(2009, 241-261)을 참고할 것.

6) 정치학적 관점에서 '엘리트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 정부의 조직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적절한 관계의 모든 부분이 엘리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김종명 2002, 2). 엘리트주의자들은 '국민에 의한 정부'는 현실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대중은 비합리적 혹은 비논리적 충동이나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을 공유한다(신정현 1996, 505-6). 대의민주주의이론에 대한 페이트먼의 비판은 이러한 가설을 공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슘페터(J. Schumpeter)의 민주주의이론에 대한 그녀의 비판(페이트먼 1986, 30-31)을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입장은 바크라크와 보트위닉(P. Bachrach & A. Botwinick 1992, 19-49)과 같은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이른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론을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7)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주창자들 역시 정치참여를 오로지 보호적 장치로만 여기고 있다. [⋯] [그러나] 예를 들어 존 스튜어트 밀과 루소의 이론에 있어 참여는 훨씬 더 폭넓은 기능을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데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일단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의제도들로써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참여적 사회**라고 간주되었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새로운 민주주의이론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제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한 '사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재정치화'의 가능성을 역설한다.[8]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전경옥은 김은경의 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9]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세력화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구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운동이 조직되고 자율적인 집단으로서 조직을 통해 여성의 의식화를 선도하고 여성주의적 정책을 요구, 주장하는 것이며,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국회, 행정부 또는 정당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전경옥 외 2010, 71)."

그러나 이들의 논의가 진정으로 엘리트주의를 극복했는가는 좀 더 살펴볼 문제이다. 페이트먼을 예로 든다면, 그녀에게 있어서도 대중은 여전히 정치에 무관심한 탈정치화된 주체이며, 따라서 엘리트와는 달리 참여의 방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사회화가 필요한 주체이다.[10] 헬드(D. Held)는 이 사실을 간파했고, 그런 점에서 페이트먼과 당대의 엘리트주

기 때문이다(페이트먼 1986, 34-35 **강조**는 필자)."

8) 강정인에 의하면 '참여민주주의론'은 참여의 영역이 '사회적 수준'인가, '정치적 수준'인가 혹은 '국제정치적 수준'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강정인 1997, 62-70).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페이트먼의 '참여민주주의론'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참여와 그에 대한 사회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론—혹은 '산업민주주의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강정인 1997, 63-64 참고).

9) 그녀가 인용한 글은 김은경,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 가능성과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5권(2004), 275-301.

10) 그녀는 루소와 같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인용하면서 대중들의 지적, 정서적 그리고 도덕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지만(페이트먼 1986,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참여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페이드먼 1986, 173-175).

의이론가들이 실상은 유사한 이론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헬드 2010, 403).[11]

여기서 본고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의식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참여민주주의론의 저변에 건재해 있는 엘리트주의적 편견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엘리트주의가 '참여'의 가치에 모순된다는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대중의 참여—이른바 '직접민주주의'—는, 비록 기술적 혁신으로 인한 가능성들이 제기되긴 하지만, 규모가 거대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것의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2] 이러한 딜레마는, 최근에 달(R. Dahl)이 현대 민주주의이론들의 엘

---

11) 그렇다고 해서 헬드가 '대중의 탈정치성'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대중은 여전히 미심쩍은 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참여의 증대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헬드 2010, 449, 513-514). 그런 이유로 헬드는 공적 사안들에 대한 '숙의(deliberation)'가 가능한, 다시 말해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절차들'-체제적 수준-을 고민하는 것이 향후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민주주의를 이른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 정의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참여와 합리성 간에 정(正)의 선형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나 민주주의가 정당하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중요 영역들에 대해 재고해 보는 것,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민주주의이론의 도전 과제는 아니다. 현대의 도전 과제는 '숙고를 거친, 일관된,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선호가 형성되도록 장려하는 절차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 민주주의이론은, "'충동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선호보다는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를 강조함으로써" 시민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헬드 2010, 441-443). 이 글은 오페와 프로이스(C. Offe & U. Preuss)의 글을 인용하며 쓴 것임. **강조**는 필자)." 결국 헬드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를 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가 된다. 헬드의 숙의민주주의론 역시 대중의 탈정치성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공유한다는 평가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때문에 정원규(2005, 295-302)는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가설들이 기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에는 엘리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2) 많은 학자들이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개인적·정치적 선택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대규모화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치적인 활동에의 참여를 늘려 오히려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관심을 양산하기도 한다

리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면서도(달 1999, 506-522), 그 스스로가 "관심 있는 대중(attentive public)"이라고 칭한 주체, 즉 "충분할 정도로 많고 능동적이며 정보를 충분히 지닌 시민들로 이루어진 비판적 대중(달 1999, 630)"으로 정의된 주체, 다시 말해 수적으로 조금 더 많아졌을 뿐 결국 '엘리트'일 수밖에 없는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소 역설적인 민주주의이론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모든 대중이 참여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의 '참여의 딜레마'는 이론적인 관점에서조차 현실로 간주되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적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은 '대중의 탈정치성'이라는 신화를 문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참여민주주의론은 대의민주주의론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탈정치성을 의심하기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혹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원래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기위해 제시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양자는 이론의 맥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유수 정치학자들에 의해 간행된 『왜 대의민주주의인가(서병훈 외 2011)』는, 실질적으로는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이론의 연구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관련된 궁극적인 비전을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그 사상적 궤는 대의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13] 이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노만 J. 빅(1994, 303-333 참고).

13) 서병훈의 "총론"은 공저자들의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국민과 대표의 심의성 부족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민들이 좀 더 사려 깊은 정치적 요구[참여]를 해야 하고, 대표들은 선호 집합적인 또는 당파 이해에 따른 이데올

말하자면, 참여민주주의론은 앞서 언급한 두 차원의 분석수준 사이에서, 즉 대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이른바 개인적 수준에서의 '참여론'을 한 극단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참여가 보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제도적 수준에서의 소위 '체제론'을 다른 한 극단으로 하면서, 해당 사회가 처해있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에 의해 선택된 지점은, 그들이 탈정치화되었다고 가정한 대중들을 상대로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재정치화할 수 있는가'라는 '엘리트의 능력'—흔히 '사회화'로 표현되는—과, 그러한 재정치화를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할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차원의 '엘리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이론들—그것이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건 혹은 '체제적 수준'의 분석이건 간에—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다루는 '엘리트의 능력'이 된다. 1987년 당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을 주장했던 활동가들이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도정치 영역에서의 '성할당제'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 역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숭고한 초석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겨진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중의 탈정치성'이 본질화되고, 따라서 대중은 '엘리트의 능력에 따라' 재정치화의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수동적 주체'로 정형화되어버린다는 점에 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황을 '대중'의 시각—엘리트의 입장이 아닌—에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혹은 '탈정치화된 관심'은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

로기적인 정치를 탈피하여 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그러나 '대표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로 압축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자화상은 이런 꿈과 너무 거리가 멀다. 어쩌면 대의민주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환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길**[대의민주주의]**말고는 민주주의를 살릴 방도가 없다는 데 있다**(서병훈 외 2011, 27, **강조**는 필자)."

한 내·외부적 환경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형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민주주의론에 의하면, 엘리트들에 의해 참여가 학습된 대중은 엘리트들에 의해 유효한 체제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참여의 결집'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가 갖추어지면 참여민주주의는 적어도 상당기간동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경험은 어떠한가? 어떤 이유로 한국사회를 뒤덮은 민주적 참여의 대(大)결집은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였나?[14)]

이러한 역설적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한 질문은 대중의 '수동성' 혹은 '탈정치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15)]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질적인 '제약성'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인해 거론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담론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담론체계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16)] 실제적으로 '먹

---

14)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장집(2009)을 참고할 것. 그는 이 저서를 통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민주화 이후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은 그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 **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이다**(최장집 2009, 19-20, **강조**는 필자)."

15)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의 탈정치성'과는 별도로 또 다른 '절차적·제도적 결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장집(2009, 242-262)을 보라. 그의 주장은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절차적·제도적 수준에서 찾는 대표적인 입장이다.

16) 그동안 주로 '빈곤'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적 조건은 19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빈곤자들의 사회적 조건은 단순한 물적 부족상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관통하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적인 결핍 상태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심창학 2001, 181).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동안 빈곤을 '개인적 차원' 혹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설정해왔던 시각이 지양되고 이른바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고 살기 힘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그에 따른 심리적 조건을 포함하는—은 대중을 정치로부터 심각하게 이격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 정치로부터 멀어진 대중을 정치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등을 돌린 탈정치화된 주체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정치적인 영역으로의 진입이 외재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단되거나 혹은 그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이러한 질문이 유효하다면, 정치적인 영역에 대중이 부재한 현상과 관련하여,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탈정치성'과는 별도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중을 배제시키는 혹은 접근을 차단시키는 제 3의 요인—개인적 요인이나 체제적 요인과는 구분되는—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여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혹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제약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비정치적' 대중: '자기결정의 원리'의 모순과 그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배제

'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정치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이론적 전제가 뒤따른다. 그것은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자가 타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라는 이른바 '자기결정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이나 이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로 가정(달 1999, 202)"된다는 것이다. 달(R. Dahl)은 이러한 자기결정의 원리가 최대한 넓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린이'와 '이성적 능력을 결여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이 그러한 원리의 적

용을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다(달 1999, 203 & 211, **강조**는 필자).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평등성' 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의 핵심원리인 자기결정의 원리는 이른바 '조건명제'이다. 이하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이른바 '구조적 제약성'에 대한 해명을 목표로 자기결정의 원리의 두 가지 조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기결정의 원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모든 성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의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도시국가'적 정치원리에서 '국민국가'적 정치원리로 확장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주권'의 개념이 고안되면서부터이다. 비록 현대에 들어 전 지구적 관계들이 중첩되면서 근대적 주권의 개념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헬드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참여민주주의론을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민주주의이론들의 대부분은 국민국가의 '바깥'으로 추정되는 세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려 하지 않았고, 그 영역이 민주주의이론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헬드 2010, 542-544). 이것은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모든 성인'의 범위를 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국가적 '국민'—비록 국민의 개념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정의처럼 '상상된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할지라도—의 범위 내에서 '주권'의 개념을 통해 해결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여기서 소위 '전 지구적 시민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국민국가 내부의 영역에서 '외부'로 취급되는 구조적 한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과 이동의 자유로 인해 국민국가 내부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문화와 신념을 달리하는 비국민적 구성원들, 정치·경제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늘어나는 비합법적 이주민들, 혹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혹은 잠정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외부'로 취급되는 주체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상기한 '비국민적' 주체들을 비교적 단순하게 '예외'로 정의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하게 취급하면서 참여의 가치를 역설해 온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7)]

둘째, 자기결정의 원리는 '모든 성인'이 궁극적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당신 자신의 선이나 이익을 더 잘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더 잘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의 정책이 당신의 이익에 최선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달 1999, 200)." 그런 맥락에서 달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다 성숙한 책임감을 갖는 것(달 1999, 210)"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책임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제약성,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인 차별로 인해 강요된 심리적인 열등감, 해당 주체가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인 궁핍성, 한계 상황에 처해있는 주체들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인 제약성 혹은 개인적·지역적·인종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갈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책임—능동적 기권의 논리 속에서—으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노출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록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지라도 실업·사고·재난·질병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17)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국내 정치학자들에 의해 간행된 『인권의 정치사상(김비환 외. 서울: 이학사, 2010)』은 국민국가적 민주주의를 '국민'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홍태영(2010)을 참고할 것.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거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방위에 걸쳐 자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주체들(J.-M. Belorgey 1988, 33-62)은 '자기결정'의 능력이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빈곤이나 사회·구조적인 제약성 등으로 인해 그러한 능력을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나 혹은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실천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행위자라는 것이다.[18]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영역에 대중이 부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이 해당 주체들의 사회적·구조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의 참여만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추궁해 온 것은 아닌지, 따라서 개인들의 의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폭력성이나 노동시장의 침체성, 혹은 사회적인 유대의 파괴나 사회적인 고립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 혹은 '미적응'의 문제(S. Paugam 1993, 65-70)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기한 두 가지의 구조적 제약들은, 비록 서구사회와 같이 절차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민주주의를 답보상태에 머물게 만들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인정된다. 해당 주체들에게 부과되는 이와 같은 제약성들은 특히 1970년대 전 지구적 경제위기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이른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해 그 실체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

18)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 주체의 자기결정권한은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조건 등에 따라 그 실현이 보장될 수도 있고 혹은 위임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달(R. Dahl)은 이러한 가능성을 '어린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달 1999, 198, 203). 그러나 상기한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참여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고민해볼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신체장애자들은 비록 그들이 체제적인 수준에서 일반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할지라도 투표장의 물리적 조건, 투표장까지의 거리, 이동수단 등등에 따라 일반인들보다 투표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들이 국민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해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과정을 요구하는 차원의 문제였다면,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그러한 참여를 구조적인 수준에서 방해하고 제한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의 입장은 갈등적이다. 그러므로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과제는, 기존의 이론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결정의 원리'를 전제로 민주적 주체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며, 그들이 표출하는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체제적 장치들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체들의 범위설정이 이미 비민주적인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구조적 제약성으로 인해 민주적인 사회통합의 지형에서 이미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그들을 정치적·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의 입장이 아닌 대중의 입장에서 바라본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주체들의 정치적 위상은 기존의 참여민주주의이론가들에 의해 공유되어진 '탈정치화된 대중'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철학자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현대사회가 '사회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른바 '정치적인 것(le politique)'[19]을 억누르고 박탈하려는 거대한 흐름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Rosanvallon 2006, 260),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치적인 것'을 회복하는

19) 로장발롱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의미의 '정치(la politique)'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을 뜻하는 보다 확대된 정치문화적 개념이다(김용우 2009, 179-180 참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 상징되는 시장자본주의는 '정치적인 것'을 배척하려는 구조적인 메커니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는 바, 시장메커니즘의 무규율적 작동으로 인한 경제적 배제의 문제는 '이론적 시민'과 '현실적 시민'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토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20] 이때 '현실적 시민'은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등을 돌린 '탈정치적 행위자(Acteurs dépolitiques)'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혹은 배제된 '비정치적 행위자(Acteurs impolitiques)'로 정의된다(Rosanvallon 2006, 27-29). 이때 비정치적 행위자들은 '정치적인 것'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주체—책임귀속이 '본인'을 지향하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거나 강탈된 사회적 피해자—책임귀속이 본인 '외부'를 지향하는—로 파악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관련된 정치과정의 핵심은,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 민주적인 사회통합의 대원칙이 마련되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독려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원들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국가 혹은 사회'[21]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차원의 문제로 승격되는 것이다.[22]

---

20) '이론적 시민'과 '현실적 시민'의 불일치 문제를 로장발롱(Rosanvallon 1998, 35-55)은 국가의 '공화주의적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딜레마'로 정의한다.

21) 물론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제로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개인들'—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가 정치·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주체들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민주주의의 과업—사회적 배제 방지—을 공론의 장에서 배제된 주체들이 요청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사회적 배제의 방지를 일차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책무로 보는 것이다(최일성 2011, 188-192 참고).

22) 이러한 관점에서 로장발롱(Rosanvallon 2006, 312-318)은 정치의 영역에서 개인들의 '의지'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개개인들

그러나 아쉽게도 여성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1987년 여연의 논지에서 정치영역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이와 같은 '비정치적 대중'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비정치적 대중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참여의 문제는 곧 정치영역으로의 진입이 배제되지 않은 일부 계층의 활동의 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지 않은 참여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정치귀족' 혹은 '정치엘리트'들만의 참여의 논의이며, 그러한 참여민주주의는 곧 '귀족민주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시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근대 국가들의 경우 여성들은 점점 더 괄목할만한 방법으로 각종 집행부문과 산업부문 그리고 문화부문에 있어서 지휘자의 위치에 접근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이나 한국과 같은 후발자본주의국가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여성에 의한 권력수임의 증가를 토대로 여성들의 민주적 주체성의 확장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이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이들에 의한 권력의 수임이 기대와는 달리 권력의 여성억압적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크리스테바 2001, 276). 상기한 국가들에서 지휘자에 오른 여성들, 권력을 갖게 된 여성들, 또한 수천 년 동안 거부되어 왔던 이점들을 차지하게 된 여성들

이 직면해 있는 '제약성'을 제거하여 그들의 '의지'를 회복시켜주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사실은 억압적 권력, 즉 그들이 가부장제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사회 질서의 가장 열정적인 수호자가 되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대항함으로써 이제 여성들도 그러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여성주의자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현 체제의 억압구조와 기존 가부장 질서에 대한 순응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참여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제시된 1987년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해 유사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당시 여성정치세력화를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이 '친여성적'일 것이라는 본질주의적 가정—비록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을 전제로,[23] 정작 그들의 엘리트주의적 편향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성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침묵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깊지 않은 1987년 여연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여성대중의 참여보다는 여성운동의 귀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6월항쟁의 열기가 지속적이지 못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과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남녀동수운동'에 대한 스콧(2009)의 연구결과는 시사적이다. 그녀에 의하면 '성할당제'의 발전적 형태로 프랑스에서 제시된 '남녀동수운동'은 그 주장의 혁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신체를 가진 개인들은 항상 '여성'이고 늘 여성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여성으로 존재할 것(스콧 2009, 273)"이라는 본질주의적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남녀동수'의 본래개념과 그 이름으로 통과된 법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참고문헌

강정인. 1997. “대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비평사.

구미영. 2007.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념의 의미와 입증.” 『노동법연구』 제23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김기선미. 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망.” 정진성·안 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서울대 여성연구소 총서 4.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용우. 2009. “프랑스 공화주의: 전체주의를 넘어서.” 『프랑스사 연구』 제21호. 한국프랑스사학회. 173-189.

김종명. 2002. “엘리트 이론의 변천과 발전: 이론적 논쟁과 그 함축.” 『국제정치연구』 제5집 제2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1-21.

김호진·임혁백 외. 2000.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달, 로버트(Dahl, A. Robert).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조기제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빅, 노만 J. 1994. 하상복 역. “기술·철학 그리고 국가: 개관.” 조지 세바인 외.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강정인·김세걸 편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303-333.

서병훈 외. 2011. 『왜 대의민주주의인가』. 서울: 이학사.

세바인, 조지 외. 1994.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강정인·김세걸 편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스콧, 조앤 W.(Scott, Joan W.). 2009. 『성적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2005)』. 오미영 외 역. 서울: 인간사랑.

신정현. 1996. 『정치학: 과학과 사유의 전개』. 서울: 법문사.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한국사회복지학회.

아리스토텔레스. 2009. 『정치학』.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전경옥·유숙란·신희선·김은실. 2011. 『한국 근현대 여성사: 정치·사회 3(1980년~현재)』. 서울: 모티브북.

정원규. 2005. “민주주의의 두 얼굴: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제10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81-329.

정진성·안진 외. 2004. 『한국현대여성사』. 서울대 여성연구소 총서 4. 서울: 한울아카데미.

조현옥 외. 2005.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총서 II. 서울: 사회와 연대.

주정립. 2006.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43-79.

참여사회연구소 편. 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비평사.

최일성. 2011. “라이시테(laïcité), 프랑스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념적 토대: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법안의 국가개입주의 성격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시론.” 『프랑스학논집』 제76집. 한국프랑스학회.

최장집. 2009.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크리스테바, 줄리아(Kristeva, Julia). 2001. 『새로운 영혼의 병(1993)』. 유재명 역. 서울: 시각과 언어.

페이트먼, 캐롤(Pateman, Carole). 1986. 『참여와 민주주의(1970)』. 권오진·홍민식 역. 서울: 도서출판 서당.

헬드, 데이비드(Held, David).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1987)』. 박찬표 역. 서울: 후마니타스.

홍태영. 2010.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서울: 이학사.

Bachrach, P., & A. Botwinick. 1992. *Power and Empowerment: A Radical Theory of Participatory Democracy*.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Belorgey, Jean-Michel. 1988. *La gauche et les pauvres*. Paris: Syros.

Ionescu, Ghiţa, & Ernest Gellner, ed. 1969.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ondon: Macmillan.

Mason, Ronald. 1982. *Participatory and Workplace Democracy: A Theoretical Development in Critique of Liberalism*.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serty Press.

Paugam, Serge. 1993. *La Société française et ses pauvres: L'éxpérience du RMI*. Paris: PUF.

Rosanvallon, Pierre. 1998. *Le Peuple introuvable: Histoire de la représentation démocratique en France*. Paris: Gallimard.

_____. 2006. *La contre-démocratie: La politique à l'âge de la défiance*. Paris: Seuil.

투고: 2012.9.19 심사: 2012.10.10 확정: 2012.11.22